opusdei.org

헌장 '웃 싯' [Ut sit]

1982년 11월 28일 헌장 '웃 싯' [Ut sit] 으로 교황 요한 바 오로 2세는 오푸스 데이를 성 직자치단으로 설립하였다.

2006-6-15

하느님의 종들의 종인 요한 바오로가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자 작성함

커다란 희망을 품고서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종 호세마리아 데 발라게르 가 하느님의 영감으로 1928년 10월 2일 마드리드에 설립한 오푸스 데이 에 대한 관심과 모성적 보살핌을 기 울여 오푸스 데이가 언제나 성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행하는 구원적 사명 의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 를 바랍니다. 이 단체는 출범 당시부 터 실제로 성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사명에 새로운 빛을 조명해 주는 것은 물론이요, 성성에 대한 보 편적 소명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 록 노력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 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일 을 통한 성화를 증진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그에 더하 여 성 십자가 사제회를 통해서 교구 사제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사도직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. 오푸 스 데이가 거룩한 은총에 힘입어 전 세계에 걸쳐 수 많은 사제와 남녀 평 신도들로 이루어진-유기적 조직이면 서 분할되지 않는- 사도적인 조직, 다 시 말해서 영성과 목표 조직 관리 그 리고 회원 양성의 모든 차원에 있어 서 통일성이 부여된 조직 체계로까지

발전한 상황에서 그 고유의 특성에 걸맞는 교계적 형태를 부여할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 사실 이미 1962년 오푸스 데이의 창설자 본인 이 겸손과 신뢰에 찬 청원을 통해서 교황청에 오푸스 데이의 본질과 신학 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 으로 사도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직에 그에 적합한 교계적 형태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제양성 에 관한 교령 제 10항-후에 교황 자 의교서 '거룩한 교회', 1장 4항에 의 해서 발효된-을 통해서 교회의 법률 적 조직 형태의 하나로 특수한 사목 활동을 추구하는 성직 자치단이라는 형태를 도입한 이후로 이러한 조직 형태가 오푸스 데이에 완전히 부합되 는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졌습니다. 따라서 1969년 전임 교황 바오로 6세 께서 하느님의 종 호세마리아 에스크 리바 데 발라게르의 청원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그로 하여금 임시 총회 를 열도록 하여 그의 주재하에 오푸

스 데이가 자신의 본질과 제 2차 바 티칸 공의회의 규범에 따라 변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. 우리들 도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도록 명시적 으로 명하였으며, 1979년 본 교황좌 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권위있는 주교성으로 하여금 오푸스 데이에 의해서 제출된 공식적인 청원 서를 관련된 사실들과 법률적 자료들 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할 것을 요 청하였습니다.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 주교성은 역사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그리고 사목적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의 깊게 검토하였습 니다. 그리하여 이러한 청원을 허락 함에 있어서의 기본 문제와 그 가능 성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 싼 온갖 의혹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나자 오푸스 데이를 성직 자치단의 형태로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적절하 고 가능한 것이라는 판단이 분명하게 서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본인은 본인에게 주어진 사도직 권한을 온전

히 행사하여 존경하는 동료 주교와 본 주교성 장관인 존경하는 추기경이 본 교황좌에 표명한 의견을 받아들이 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판단함에 있 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지 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여기기면서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시행되기를 명하고 희망 하는 바입니다.

데이라는 공식 명칭과 함께 약칭으로 오푸스 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제적 인 차원의 성직 자치단의 자격을 갖 는다. 성 십자가 사제회는 내적으로 본 자치단에 일치된 성직자들의 조직 이라는 성격을 갖는다.

I. 오푸스 데이는 성 십자가와 오푸스

II. 본 성직 자치단은 교회법의 일반적 인 규범과 본 헌장에 마련된 규정 및 "오푸스 데이 특별법"이라 불리는 자 체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된다.

III. 본 성직 자치단의 관할권은 성직 자치단에서 서품 받은 성직자들과 성 직 자치단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각 교구와의 연대를 통해서 시행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오푸스 데이 성직자치단의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평신도들에게까지 미친다. 이에 해당되는 성직자와평신도 모두는 앞서 언급된 조항에명시되어 있는 성직 자치단의 사목적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성직 자치단 단장의 권한 하에 놓이게 된다.

IV.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의 책임 주교는 단장으로서 단장의 선출은 교 회법 일반법과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로마 교황 청에 의해서 인준되어야 한다.

V. 본 회는 주교성 관할 하에 있으며 관련된 사안에 따라서 본 교황청의 기타 성청이나 부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될 것이다.

VI. 주교성을 통해서 오푸스 데이의 단장은 5년 마다 로마 교황청에 본 성직 자치단의 실태와 사도직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.

VII. 오푸스 데이 총본부 사무실은 로마에 위치한다. 오푸스 데이 총본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평화의 모후 경당은 성직자치단 관할 성당이된다. 알바로 델 포르띠요 몬시뇰은교회법적인 절차에 따라 1975년 9월15일 오푸스 데이 총장으로 선출된바 있으며 다시 그것을 재확인하고성십자가 사제회와 오푸스 데이 성직자치단의 단장으로 인준하는 바이다.

마지막으로 본 교황좌는 시도네의 명의 대주교이자 이탈리아 교황대사인 로몰로 카르보니 대주교를 위에 언급 된 사항들을 시행하는 적임자로서 임 명하며 교회의 고위 성직자에게 당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권한과 함께 이러한 위임 사항이 시 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사본을 주교성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할 책임과 함께 위의 사항 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바입니다.

1982년 11월 28일 교황 재위 28주년 에 로마에서 반포함.

아우그스티누스 추기경, 국무장관 카 사롤리 추기경, 세바스챤 추기경, 주 교성 장관 밧지오 추기경, 선임 공증 인 요세푸스 델 톤, 선임 공증인 마르 첼루스 로세티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heonjang-us-sis-ut-sit/ (2025-12-11)